

제 2장 협력사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제 1 조 (목 적)

이 실천사항은 (주)반도건설의 협력사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협력사”라 함은 (주)반도건설의 제조.건설.용역위탁 거래 등의 대상 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 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도 포함한다.
2. “협력사 풀(Pool)”이라 함은 (주)반도건설이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운용하는 협력사 그룹을 의미한다.
3. “협력사 선정”이라 함은 (주)반도건설의 협력사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협력사 운용”이라 함은 (주)반도건설이 협력사로 선정.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록취소 등 협력사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 3 조 (협력사 선정.운용 실천사항)

제 ① 항 (기본원칙)

이 실천사항은 (주)반도건설의 협력사 선정 및 협력사 풀 운용에 대한 자율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주)반도건설이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 ② 항 (협력사 선정.운용 실천사항)

가. 협력사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1. 협력사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사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전 또는 등록(갱신등록 포함)심사 개시 30일전에 사업장, 전자매체(당사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개 하여야 한다.

ㄴ. 협력사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 업체에 대하여 45일 전에 그 사항을 전자매체(B2B)로 확인 할 수 있다.

ㄷ. 협력사 선정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전자매체(B2B)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나. 선정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주)반도건설은 협력사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ㄱ. 협력사 선정기준은 위탁할 거래 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세부 선정기준별 반영 비중의 배분이 적절하여야 한다.

<선정기준의 필수조건>

- ① 관련 법규에 의한 해당 전문면허 보유여부
=> 면허 보유기간 5년 이상
- ②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대상 업체의 재무건전성 여부
=> 이크레더블 신용평가 필수, 신용등급 B이상, 현금흐름등급 C+이상
- ③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종별 기준금액(당사 기준) 이상
- ④ 일정기간 동안의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실 여부

ㄴ. 협력사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ㄷ.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라.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협력사로 선정·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 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 기회 등이 제한 되거나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마. 협력사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ㄱ. 협력사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등록취소기준>

- ① 협력사 등록 평가 시, 기준 점수 미달인 업체
- ② 당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③ 부도, 휴업, 폐업, 임금체불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 ④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⑤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⑥ 회사에 재정적 손실 또는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 ⑦ 안전(중대재해), 환경, 품질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
- ⑧ 중대 하자발생 또는 하자보수 요청에 불응한 경우
- ⑨ 회사의 임직원에게 뇌물 제공, 협박 등을 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문란케 한 경우
- ⑩ 등록 후 3년간 신규계약 실적이 없는 등 기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회사

바. (주)반도건설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취하고 인사 및 상벌규정 등 회사 내부 규정에 취하여야 한다.